

裁縫機特許權은 에리어스 포

—미신은 託傳된 日本發音—

미신으로 통하는 이른바 소윙머신인 裁縫틀은 1790년에 英國의 토마스 센트가 구두를 꿰매기 위해서 만든 것이며 프랑스의 파솔로류 치모니에는 軍服은 만들기 위해서 考案했다.

그러나 바늘끝에 바늘구멍이 있는 2重꿰매기 머신은 1834년에 美國의 월터 한트가 發明하였고 1845년에 역시 미국의 에리어스 포가 改良하여 오늘날과 같은 만들어의 재봉틀에 대한 特許를 얻었다.

世界的인 재봉틀인 싱거 머신은 한트의 特許權을 侵害하여 재봉틀을 製造販賣하다가 莫大한 賠償을 支拂하기에 이르렀으나 결국은 特허권의 實施權을 얻었으며 남아 하지 않던 月賦販賣로 成功하여 마침내 世界市場을 席捲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日本市場은 90%以上이 싱거에 의해 占有되었었다.

그 후 싱거가 取한 特許戰略은 家庭用재봉틀에 관한 美國特許이면 全部를 買占하였고 또한 輸入되는 머신은 모두가 그 特허권의 權利範圍에 들어가도록 그 特허의 클레임을 넓혀 再發行特許를 取得하였다. 그런 다음 미국에 수입되는 재봉틀 가운데 日本裁縫機는 苛借없이 特許權侵害訴訟을 提起하였다.

미국의 再發行特許明細書는 1部를 削除한 경우 그 事項을 코트하는등 方法으로 表示하고 있으며 追加했을 경우에는 新舊가 分棟되도록 언더라인을 그어 表示하고 있다. 또한 再發行特許는 番號앞에 Re, (Reissue의 略字)의 記號를 表記하여 通常特許와 區別하고 있다.

한편 싱거가 日本業者를 相對로 提起한 머신 特許侵害事件은 美國法院에서 長期에 걸쳐 繼屬되었다. 그러나 被告會社들은 答辯書에서 原告인 싱거의 行爲는 反트러스트法違反이라고 主張하였다.

이 反트러스트法은 獨占禁止法이며 셔먼法(1890年改正), 클레이튼法(1914年改正)이라고도 한다. 일본에도 1947년 4월 14일에 法律第54號

로 制定하고 그 뒤에 개정한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이란 獨占禁止法이 있다.

이와같은 繼爭을 契機로 美法務省은 싱거를被告로 하여 反트러스트法違反訴를 제기하여 終末엔 싱거의 行爲를 反트러스트法違反으로 認定케 되어 싱거는 當該特許權에 대한 침해소송제기는 금지되었다.

이 결과 일본의 머신업자들은 싱거와의 사이에 特許料를 지불하는 特許實施契約을 맺게 되었고 그 製品의 對美輸出은 繼續되었다. 이 事件의 教訓은 獨占意圖가 分明하면 自由스럽고公正한 競業秩序를 확보할 것을 目的으로하는 反트러스트法의 위반이란 結論이 나온다.

反트러스트法은 特許權自體의 有効나 無効에 역배이지는 않으나 特허권의 그같은 使用方法은 正當하지 못하다는 機能을 發揮하게 된다.

따라서 싱거는 技術料를 받게된 대신에 販訴의 代價로 巨額의 損害賠償金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러나 싱거는 로열티를 받고 배상금을 지불하게되는 訴訟期間中에도 市場確保, 즉 權利의 排他性이란 有利한 高地를 利用하여 企業戰略을 有効適切히 展開하였기 때문에 세계시장에로의 進出이 크게 伸張하였다.

日本裁縫機生產業者들이 이같은 머신의 國際特許戰에 휘말리게 된 動機는 且置하고 日人们이 처음으로 머신을 본 것은 德川幕府末期의 勝海舟가 咸臨丸이란 軍艦을 이끌고 처음으로 太平洋을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入港했을 때의 일이다.

100餘名의 乘務員이 탄 이 배는 元來 네덜란드에서 建造한 것이며 이 배에는 존萬次朗이란 通譯이 따랐었고 그가 샌프란시스코에 上陸하여 거닐다가 재봉틀을 發見, 神奇하게 여기고 賽物로 사서 歸國한 것이 일본 재봉틀 사용의 始初이다. 그때 그 재봉틀을 소윙머신이라고 한 것을 日人们이 미신으로 發音하게 되어 오늘까지 恒用 미신이라고 부르고 있다.